

# 2024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기준

## I 지원기간 및 근로시간

- 지원기간: 2024학년도
- 근로시간

1일 최대	주당 최대		학기당 최대
	학기 중	방학 중	
8시간	20시간	40시간	450시간*

- \* 예산 상황에 따라 학기당 최대 520시간으로 확대 가능
- \* <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> 증빙서류 제출자는 예외

## II 선발 기준

- 교내 및 교외근로 공통기준
  - 국가근로 장학사업 기본요건\*을 갖춘 정규학기 재학생(신·편입생 포함)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

\*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확인자

- 과거 근태·근로불량자(2개 학기 이상 경고 등)는 선발 제외

- 교내근로(일반) : 선발 순위에 따라 선발

1순위	2순위	3순위
- 학자금지원구간(0-4) -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* -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*	학자금지원구간(5-6)	학자금지원구간(7-9)

- 동 순위 경우: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
- 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은 선발기준을 완화하여 최우선으로 선발 가능
- \*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: 증빙서류 제출 필수(별첨1 참고)
- \*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: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부모 실직 및 휴·폐업, 파산·회생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(별첨2 참고)

- 교외근로(일반) : 자격요건 충족자 중 근로기관 선발 조건에 따라 선발
  - 자격요건 : 학자금지원구간 9분위 이하 학생
  - 선발조건 : 교외근로 협약기관의 매학기 선발 우선 조건 충족자 우선 선발
    - 조건 충족자가 없는 경우, 학자금 지원구간 순으로 선발

□ 장애학생 도우미

1순위	2순위	3순위
동일학과	면접	직전학기 성적

- 대체장학생 선발(교내/교외/장애학생도우미)
  - 국가근로학생이 사정에 의해 중도에 근로를 포기할 경우, 위의 기준과 동일하게 대체 선발

### Ⅲ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

- 근로장학생 활동관리
  - 상·하반기 사전교육 실시
  - 상·하반기 간담회 개최 (고충, 애로사항, 의견교환 등)
- 장학생 자격관리
  - 허위근로의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
  - 대리근로의 경우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
  - 대체근로의 경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
-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
  - 매월 초 출근부 마감 이후, 지출 부서에 지급 의뢰 (매월 17일 이전 지급)
- 근로기관 자격관리
  - 우리대학교와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협약서 체결 기관 및 한국장학재단에 우수근로기관으로 선정된 곳을 우선 배정
  - 근로장학생의 사회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봉사 등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곳으로 우선 배정

**별첨 1**

**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**

구분	제출서류
장애인	·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
다자녀가정 자녀 (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)	· 다자녀증명서(★아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필요) -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- 본인의 미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 명의 가족 관계증명서 등
다문화가정 자녀	·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탈북가정 자녀	· 북한이탈주민 확인서
국가유공자	· 국가유공자 증명서(본인에 한함)
국가보훈자	· 국가보훈자 증빙서류(본인에 한함)
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	·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	·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※ 중증환자 인정 범위: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, 뇌질환, 희귀성 난치질환) 및 폐결핵, 전치 12주 이상 상해
학업·육아병행자	· 가족관계증명서(자녀 연령 확인 가능해야 함) ※ 학업·육아병행 시 육아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 (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)
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 보호가 종료된 학생	· 보호종료 확인서 (퇴소 확인서, 쉼터 입소 사실확인서 가능)

※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.

**별첨 2**

**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증빙서류**

구분	제출서류
<p>학부모 실직 휴·폐업 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[실직]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건강보험공단), 국민연금가입자증명(국민연금공단),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(근로복지공단),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등</li> <li>• [휴·폐업] 휴·폐업사실증명(국세청)</li> </ul> <p>※ 부모 중 1인의 실직 및 휴·폐업 증빙 필요            ※ 장학생 선발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           ※ 장학생 선발일 이전에 실직, 휴·폐업 사실이 확인되고, 선발일 시점까지 그 현황이 지속되고 있을 경우</p>
<p>파산/면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개인파산(또는 면책결정) 선고 통지</li> </ul>
<p>회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개인회생 인가(또는 면책) 결정 통지</li> </ul>
<p>기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,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</li> </ul>